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제85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11. 28 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기숙사 거주학생의 90%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던 것을 주민등록 비율에 따라 차등지원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전입세대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“2인이상 전입”이라 함은 1인 전입 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함(안 제2조 제3호)
- 나. 관내대학 기숙사 거주학생 주민등록 비율을 90%이상에서 50%이상으로 하고,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 제3호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연간 200백만원
- 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 - 2) 입법예고(2006. 11. 1 ~ 11. 20)결과, 제출된 의견없음
 - 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조례 제 호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말한다”를 “말하며, “2인 이상 전입” 이라 함은 1인 전입 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기숙사 거주학생의 50%이상이 시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의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전입세대”라 함은 전입일 기준으로 3년이전부터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숙사 거주학생의 <u>90%</u>이상이 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<u>대학생 또는 대학에 지원한다</u></p> <p>4.(생략)</p>	<p>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말하며,“2인 이상 전입” 이라 함은 1인 전입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편입한 경우도 포함한다.</p> <p>제3조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50%</u>----- -----주민등록의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4.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【지방자치법】(일부개정 2005.8.4 법률 7670호)

第15條 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. 다만,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 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